증권담보융자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증권 담보융자(이하 "융자"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한양증권주식회사에 증권거래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한양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의 융자 거래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제2조(관계법령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 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조(융자의 종류)

융자는 고객이 고객의 증권계좌에 예탁/등록되어 있는 증권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일반담보융 자와 증권을 매도주문하여 해당주문이 체결된 경우로서 매도한 증권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매 도담보융자가 있다.

제4조(융자약정)

- ① 고객은 융자신청을 함에 있어 회사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홈트레이딩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융자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융자약정의 효력은 고객이 직접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고객이 융자약정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하여 변경한다.
- ③ 고객은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거나 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융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융자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고객은 별도의 융자약정 재체결 없이도 융자의 상환 후에 계속하여 융자약정에 따른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⑤ 회사는 <별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융자약정 대상 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기 융자약정 체결자 및 융자를 받고 있는 고객이 융자약정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신규 및 추가 융자를 금지할 수 있다.
- ⑥ 인지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융자금액)

- ① 회사는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금액 최고한도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 ② 회사가 일반담보융자를 할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가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융자하며, 매도담보융자를 할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매도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

제6조(융자기간 및 융자방법)

- ① 융자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융자는 서면, 전화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실행시 융자금은 해당 증권계좌에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제7조(담보의 징구 및 관리)

- ① 회사는 융자시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한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예탁/등록증권 또는 매도증권을 담보로 징구한다.
- ② 고객은 담보증권 또는 대용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 ⑥ 회사는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①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는 담보물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별도의 약정 없이 융자 약정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융자의 상환)

- ①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융자금 및 융자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상환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융자원금의 순으로 한다.
- ②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금 및 융자이자는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 결제일에 매도결제처리에 의한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된다.

제9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증권담보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할수 있다. 다만, 매도담보융자의 경우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가 자동 상환되므로

회사가 별도의 상환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추가담보를 징구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제7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 정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임의상환 방법)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3. 고객이 신용거래와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회사는 제7조 제2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등록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야 한다.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 3. 상장채권: 증권시장에서 시장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또는 장외시장에서 처분
 -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의한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융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융자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융자이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이자를 약정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신용거래융자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이자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③ 제2항의 이자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권은 담보로 제공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 상신주, 그 밖의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3조(담보증권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예탁/등록증권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타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기한이익의 상실)

-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

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 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15조(금지사항) 회사는 융자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융자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융자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융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

- 1. 당해 융자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제16조(융자의 제한 및 중단)

- ① 회사는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융자 총 한도 초과 등 회사가 융자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융자를 중단할 수 있고, 동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융자를 재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융자 신청일에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등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시한다.

제17조(추가비용)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담보권 실행 등 채권보전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

- 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점>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9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mark>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mark>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기초한 융자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매도담보융자"시행은 회사가 추후 결정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츠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츠

이 약관은 2016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 1. 제4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약정 대상 고객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채무불이행자, 성년후견/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 미성년자, NICE신용평가(주)에 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점수가 594점 이하인 유의고객 그룹
-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개인 : 1억 원 (최초 기본한도)

□ 그룹별 신용공여 한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구분	고객분류 점수				
1 4	1000~920	919~780	779~595	594~0	
그룹	프리미엄 고객	우수고객	일반고객	유의고객	
 그룹별 기본한도	5억	3억	1억	거래불가	

주) 1. NICE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신용점수 기준

주) 2. HTS를 통한 약정시 개인고객의 최대한도 : 1억 원

□ 법인 : 3억원 (HTS 약정구분 없이 3억원)

- 3. 제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가액의 일정비율 범위내는 다음과 같다.
 - □ 상장주식

구분	신용A종목군	신용B종목군	신용C종목군 이하
기본형	60%이내	55%이내	50%이내

□ 상장채권 : 채권대용가의 60% 이내

□ 수익증권

구분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	MMF
기준가대비	60%이내	70%이내	70%이내	70%이내

□ 매도담보융자 : 매도금액의 95%

4.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 기본융자기간 : 90일

□ 상환연장 : 90일 단위로 연장 가능

5. 제7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주 식				채권	수익증권
신용A종목군 신용B종목군 신용C종목군 신용불가종목군				게 선	구취 공 년
140%	145%	150%	170%	150%	140%

- 6. 제7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 □ 140% ~ 170% 미만 (종목군별 차등) : 추가담보요구일로부터 1영업일이내
- □ 120%미만 : 추가담보요구일 당일이내
- 7.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증권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8. 제10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임의상환 처분수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 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하한가로 매도체결 가정 시 체결금액 전액을 증권담보융자금으로 상환하여 담보유지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수량을 산정함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 [X] 산정식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¹⁾ × X)]

주식처분수량 [X] = $\frac{(신용공여잔고 \times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전일 종가) \times 보유수량}{(매도가격<math>^{1)}$ \times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전일 종가)

- 1) 매도가격: 전일 종가 대비 하한가(-30%) 가격
- 2) 동사는 반대매매 기준이 전일종가 대비 하한가(-30%) 가격이므로 담보유지비율에 따라 담보부족 시 해당 주식이 전량 처분될 수 있음
- 3) 상기 계산식에는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융자이자) 미포함

<예시>

① 투자원금 400만원, 증권담보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날 짜	주 가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67%		
D일 장마감	8,500원	8,500,000원	142%	140% = 840만원	
D+1일	8,300원	8,300,000원	138%	추가담보 납부 요구	
D+2일	8,100원	8,100,000원	135%	추가담보미납 (300,000원)	
D+3일	5,670원	5,670,000원		추가담보미납 (330,000원)	
(반대매매)	보유주식 전	전일 종가(8,100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5,670원)으로 산정해 처분 량 처분했으나 증권담보융자금 6,000,000원 대비 330,000원 부족 330,000원 추가납부 필요			

-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이상으로 되는 경우 부족금액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융자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② 투자원금 400만원, 증권담보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 매수 담보유지비율 150%, 현금 0원

날 짜	주 가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D일 장중	10,000원	10,000,000원	167%		
D일 장마감	9,000원	9,000,000원	150%	150% = 900만원	
D+1일	8,900원	8,900,000원	148%	추가담보 납부 요구	
D+2일	8,800원	8,800,000원	147%	추가담보미납 (200,000원)	
D+3일	매도가격을 전일 종가(8,800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6,160원)으로 산정해 처분				
	455주 = (6,000,000원 × 1.5) - 8,800원 × 1,000주 (6,160원 × 1.5) - 8,80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융자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나. 증권담보융자금 미상환시 임의상환(반대매매)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상환 처리로 발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함

[증권담보융자금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반대매매) 수량산정] <예시> - 투자원금 400만원, 증권담보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12,000원	12,000,000원	200%		
D+1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30%인 8,400원으로 할 경우, 증권 담보융자금인 600만원 (6,000,000원/8,400원 = 715주) 상환을 위해 715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8,000원	8,000,000원	133%		
D+1일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 대비 -30%인 5,600원으로 할 경우, 증권담보융 자금인 600만원 (6,000,000원/5,600원 = 1,071주) 상환을 위해 1,000주를 모 두 임의처분 수량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40만원을 추가 납부				

[※]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이상으로 되는 경우 부족금액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9. 제10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융자일자 오래된 순 → 종목번호 빠른 순
- 10. 제10조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 임의상환 처분일 오전 8시 30분 까지
- 11. 제1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 증권담보융자 이자율(회사 홈페이지 게시)
 - : 고객센터 > 업무안내 >신용공여 안내 >증권담보융자
 - □ 매도담보융자 이자율 : 연 9%
 - ※ 이자 계산기간 :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 12. 제1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융자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융자금 상환시 계좌에서 자동으로 징수
- 13. 제11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 회사 홈페이지 게시
 - : 고객센터 > 업무안내 >신용공여 안내 >증권담보융자
 - ※ 이자 계산기간 :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 14. 제1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신용도별 융자 가능, 금지.제한 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고객분류 점수				
1 4	1000~920	919~780	779~595	594~0	
그룹	프리미엄 고객	우수고객	일반고객	유의고객	
그룹별 기본한도	5억	3억	1억	거래불가	

15. 제1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는 개별합의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